VERTIUM

울산테크노일반산업단지 1B-1블록 호반베르디움 입주자모집공고

※ 본 주택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본 주택은 2017.11.2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7.12.14 입니다. (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임)
- ■ 본 주택은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금융결제원에서 운영하는 아파트투유(www.apt2you.com) 및 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파트투유(www.apt2you.com)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청약 가상체험관", 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청약신청 안내"를 활용하시기 바람]
- ■ 본 주택은 주택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영주택이며,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점수로 계산하여 당첨자를 선정하는 '청약가점제'가 적용됩니다. ■ 본 주택(아파트)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의거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으로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가점제로 공급하고, 60%를 추첨제로 공급합니다.
- ■ 아래의 사항을 참조하시어 청약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청약 순위체계 간소화 및 청약통장 순위발생 요건 완화 : 기존 '1, 2, 3순위' 방식을 → '1, 2순위' 방식으로 간소화 – 민영주택 특별공급 신청시 무주택세대주 요건 완화 : 기존 '무주택세대주'인 경우만 신청이 가능하였으나 → 세대주가 아닌 '무주택세대구성원'의 경우에도 신청 가능(1세대에서 1명만 청약신청 가능) 단,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의 경우 기존과 같이 무주택세대주 요건이 계속 적용됨.
  – 입주자저축 예치금액 변경기간 등 제한 완화 : 예치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모든 규모에 청약 가능 / 주택규모변경 기간(2년) 및 주택규모 상향 시 청약제한 기간(3개월) 폐지 – 민영주택 가점제 청약 시 유주택자 감점제도 폐지 : 주택소유 수에 따른 감점 폐지
  – 소형 저가주택 기준 완화 : 기존 '60㎡ 이하, 공시가격 7천만원 이하' 에서 → '60㎡ 이하, 공시가격 수도권 1억3천만원 이하, 비수도권 8천만원 이하'로 변경
  – 예비입주자 선정시 가점제 우선 적용(가점제를 적용하여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가점제를 우선 적용하여 1순위내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의 예비입주자로 선정. 다만, 1순위에서 경쟁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와 2순위는 현행과 같이 추첨방식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청약 자격 강화로 현재 지역별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청약예 · 부금 및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된 자에 한하여 2순위 청약 가능 – 예비당첨자 비율 20%에서 40%(소수점이하는 절상한다)로 변경
  ※ 상기 내용 외 자세한 사항은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본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3호 바목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지역(울산광역시)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자도 공급대상에 포함됨. 단, 본 주택의 공급신청자 중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 제3항에 의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울산광역시 거주자가 우선함.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제1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일반공급 대상 주택수의 40퍼센트(소수점이하는 절상한다)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ut-hoban.co.kr)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2017.11.2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제6항 제2호에 의거 본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제한자로 관리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제한사항 적용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과거 2년이내 가점제 적용 : 당첨자발표일이 2017.10.18. 이후인 민영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된 경우부터 적용. ※ 1순위 청약시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접수 가능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 됨.
-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에 의해 당첨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추첨)은 금융결제원에서 실시합니다.[단,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은 사업주체가 담당하며, 동·호수 배정(추첨)은 금융결제원에서 실시함] ■ 해당 주택건설지역(울산광역시)은 「주택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입니다.
- ■ 본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제3호 바목에 의거하여 지역 제한 없이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동일 순위내 경쟁이 있을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 제3항에 의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7.12.14)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울산광역시)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 2017년 1월 20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통합 제정·시행됨에 따라, 동법 제3조 및 시행령 제3조 등에 의거, 아파트 분양계약 역시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으로 포함되어,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사업주체 및 계약자가 공동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의무를 부담합니다(추가선택품목 계약 등 추가 계약의 체결로 인해 총 계약금액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 신고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만약, 해당 기간 내에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타 부동산거래신고 방법 등에 대해서는 분양계약 체결 시, 계약자들에게 별도로 자세하게 안내해드릴 예정입니다.
- ■ 청약신청자격별 청약신청 일정이 다르므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청약신청 일정 등을 확인하시고, 해당 순위 접수일에 접수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으로서 본 주택의 해당 순위 입주자 저축 요건에 충족할 경우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의 청약자격이 개정되었으니 청약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무주택군인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유주택자도 청약 가능) – 입주자저축 1년이상 가입자 → 본 주택의 해당순위(1순위 및 2순위)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시 청약 가능
- ■ 고령자와 장애인 및 다자녀가구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2017.12.14) 현재 청약신청자나 청약신청자의 세대에 속한 자 중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가 있는 경우에 주택 공급신청(특별 및 일반공급)시 최하층을 희망하는 때에는 해당 최하층을 그 당첨자에게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고령자 또는 장애인과 다자녀가구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고령자 또는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하며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 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 ■ 전매금지 및 재당첨 제한기간(전매금지 및 재당첨제한 등의 사항은 청약시점의 관련법규의 적용을 받으며, 향후 관계법규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본 주택은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주택법」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주택법」제64조 제1항 및 「주택법시행령」 제73조 제1항 [별표3] 규정에 의거 최초로 주택공급 계약체결이 가능한 날(2018.01.16)부터 1년 동안 전매가 금지됩니다.
  – 단, 본 주택은 수도권 외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에 공급하는 민영주택으로 기존주택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본 주택의 청약이 가능합니다.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며, 당첨 통장은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 재당첨 제한 대상 주택 : 규칙 제3조 제2항 각호(제3호, 제5호, 제7호 및 제9호는 제외한다)의 주택, 이전기관종사자 등 특별공급에 따른 주택,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 재당첨 제한기간 : 과밀억제권역 85㎡이하 – 당첨일로부터 5년, 85㎡초과 – 당첨일로부터 3년/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85㎡이하 – 당첨일로부터 3년, 85㎡초과 – 당첨일로부터 1년
  ※ 청약과열지역 : 서울시 · 경기도 과천시 · 성남시 · 광명시 – 모든 주택 / 하남시 · 고양시 · 남양주시 · 화성시(동탄2에 한함) · 부산 기장군 – 공공택지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연제구 · 동래구 · 남구 · 수영구 · 부산진구 – 민간택지 /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 공공택지
  – 부적격 당첨자 제한기간 강화 : 당첨일로부터 3개월 → 당첨일로부터 1년 연장 ※ 투기과열지구 : 서울시 전지역, 경기도 과천시 전역, 성남시 분당구, 대구광역시 수성구,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 본 주택의 당첨자로 선정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의거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 접수가 제한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청약자의 편의를 위해 사이버모델하우스(http://ut-hoban.co.kr)를 운영하오니 직접 방문하지 않으셔도 견본주택 관람이 가능합니다. 단, 사이버모델하우스만을 관람하고 청약할 경우에는 판단의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청약기간 내 실제 견본주택을 직접 방문 · 확인하여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 투기 적발자 처벌(「주택법」 제101조)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 「주택법」에 따라 주택공급계약 취소, 형사고발로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업자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의거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상기 내용 외 자세한 사항은 2017.11.2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1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울산광역시 남구청 건축허가과 – 66980호(2017.12.14)로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울산광역시 남구 두왕동 울산테크노일반산업단지 1B–1블록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2층, 지상15층 7개동 총 401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산업단지 종사자 특별공급 39세대, 기관추천 특별공급 39세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39세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39세대,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11세대 포함]

■ 공급대상

(단위 : ㎡, 세대)

구분	아파트코드 및 주택관리번호	주택형 (주거전용 면적기준)	세대별 계약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	공급세대수							최하층 배정 세대수	입주예정 시기
			세대별 공급면적			기타 공용면적	합계		계	특별공급					일반공급		
			주거전용	주거공용	소계					산업단지	기관추천 (일반)	다자녀 가구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자			
민영주택	2017001789–01	84.9801A	84.9801	23.8111	108.7912	50.5857	159.3769	53.5910	237	23	23	23	23	7	138	16	2019년 12월
	2017001789–02	84.8996B	84.8996	23.8688	108.7684	50.5378	159.3062	53.5403	104	10	10	10	10	3	61	7	
	2017001789–03	84.8233C	84.8233	23.8492	108.6725	50.4923	159.1648	53.4922	60	6	6	6	6	1	35	4	

11. 보증사고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기타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다만, 사양선택 품목과 관련한 금액이 보증금액에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기타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 · 공동사업주체 · 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 · 공동사업주체 · 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 · 공동사업주체 · 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 · 공동사업주체 · 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대여받아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② 보증회사가 제6조에 의거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보증회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 통지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 통지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기재된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한다)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보증회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에 한하여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 분	상 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주체, 시공회사	(주)호반건설주택	200111–0185863

▣ 견본주택 사이버모델하우스 : http://ut-hoban.co.kr
▣ 견본주택 위치 :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979번지
▣ 분양문의 : ☎ 1566–2822

※ 본 입주자 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당사 견본주택 또는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HOBAN

울산 테크노 호반베르디움

1B-1, 2B-2, 2B-1(임대) 블록

총1,135세대

| 모델하우스 |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979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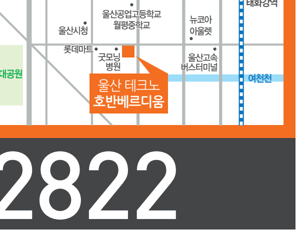

1566-2822